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4014
----------	-------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8112	이인선의원	2025.02.12.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2209809	박성민의원	2025.04.15.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 자원특허소위원회(2025.9.10.) 상정, 축 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1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이를 ‘매출액 산정자료 거부·허위 제출’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하여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기 판매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를 제한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전력시장을 통한 구매도 허용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전기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 중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를 “분산에너지사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족한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를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과징금) ① (생략) <u><신설></u>	제21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과징금의 부과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③ <u>제1항과 제2항</u> ----- ----- ----- -----.
제43조(<u>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u>) ① (생략) ② <u>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사고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u>	제43조(<u>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거래</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부족하거나 남</u>

<u>는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고, 전력이 남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거나 전기판매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u> ③ ~ ⑦ (생략)	<u>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u> ----- ----- ----- ----- -----. ③ ~ ⑦ (현행과 같음)
---	---